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71 발의연월일: 2024. 7. 30.

발 의 자:조인철·신정훈·정진욱

문진석 • 이개호 • 한정애

서천호 · 안도걸 · 이기헌

황정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형사법은 책임이 있어야 형벌도 있다는 책임주의 대원칙 아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행위는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아 형벌을 감면함. 우리 「형법」도 심신상실 상태에서 행한 행위는 벌하지아니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행위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고 있을 뿐임.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예견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있음. 실제로, 반인륜적 범죄 또는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받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음.

그런데 음주행위가 자의로 인한 것이었다면 반드시 음주행위 시에 결과를 예견하지 아니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의 와 형평에 부합하는 법의 태도라는 견해가 지지를 얻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 부분을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 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심신장애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10조).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危險의 發生을 豫見하고 自意로 心神障碍를 惹起한者의 行爲에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를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를 야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0條(심신장애인) ①・② (생	第10條(심신장애인)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危險의 發生을 豫見하고 自	③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를
意로 心神障碍를 惹起한 者의	야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行爲에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	<u> 및 제2항을 적용하지</u>
<u>하지</u> 아니한다.	